

1.1

어린이운송용 승합버스 속도제한(시속110km)장치

- 자동차 튜닝의 경우 관리법 제29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튜닝이 가능하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7년 11월 14일에 개정되었고, 제54조 관련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므로 2019년 11월 15일 이후 튜닝(구조변경)받고자 하는 차량은 속도제한 장치를 설치하여야함.

1.
2

어린이운송용 승합버스 속도제한(시속110km)장치

- 2013년 8월 16일 이후 출고 승합버스(11인승이상)는 속도제한(시속110km)장치가 의무 장착되어 출고됨.
- 장착여부는 전자장치진단기 또는 속도계 검사장비로 확인하므로 일반인이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.

2.1

가시광선 투과율 검사 기준 및 방법의 신설

- 차내 어린이 방치여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모든 창유리의 **가시광선투과율 70%이상** 확보토록 의무화('17.11.14)됨에 따라, 자동차검사시 이를 확인함으로써 법령개정의 실효성을 확보

2.2

가시광선 투과율 검사 기준 및 방법의 신설

- **자동차검사 부적합기준에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가시광선투과율 기준 허용기준 미충족을 추가하고, 자동차검사기준 및 시설기준에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 추가**

2.3

가시광선 투과율 검사 기준 및 방법의 신설

- 정기검사나 튜닝 시 부적합 판정나면
시정 후 재검사
(틴틴:일명썬팅,컬러유리모두적용)
- 2021년 1월 1일 검사소 적용 예정
(정확한 시기는 미정)

3.1

태호 유찬이법 2020년 11월27일 시행

□ 어린이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

(기존) 유치원, 초등학교, 특수학교, 어린이집,
학원, 체육시설

(개정 후 추가된 시설)

교습소, 유아교육진흥원, 대안학교, 외국인학교, 아동복지시설,
청소년수련시설, 장애인복지시설, 공공도서관, 시·도 평생교육진흥원,
사회복지관, 시·군·구 평생학습관, 사회복지시설

3.2

태호 유찬이법 통학버스 운영자 준수

▶ 미신고 운행(제52조제1항)	과태료 30만원
▶ (신설)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 △ 자동차안전기준(자동차규칙)에서 정한 구조 △ 어린이보호표지 △ 보험 △ 소유관계	500만원 이하 과태료
▶ (강화)동승보호자 동승 의무(제53조제3항) ▶ (신설)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(제53조제6항)	형사처벌
▶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(제52조제2항)	과태료 3만원

3.3

태호 유찬이법 통학버스 운영자 준수

동승자 탑승

- 표지부착 위치 : 탑승구, 차 뒷면
- 재질 : 고무자석
- 법조문 : 도로교통법 제53조6항

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

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,

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

-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

3.4

태호 유찬이법

통학버스 운전자 준수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(제53조제1항)▶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확인 후 출발(제53조제2항)▶ (신설)동승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 (제53조의5)※ 2022. 11. 26.까지 신설12종시설만 적용(교습소)	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(강화)운행종료 후 어린이하차 확인(제53조제4항)▶ (강화)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(제53조제5항)	형사처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어린이 안전띠 착용(제53조제2항)	과태료 6만원

3.5

태호 유찬이법

운영자 · 운전자 · 동승자교육

▶ 안전교육 이수 의무(법 제53조의3)

- 신규 교육 및 2년마다 정기교육

▶ (산실)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
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(제53조제7항)

(교육감 · 지자체장)

과태료
8만원

□ 온라인교육 :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

□ 대면교육: 도로교통공단 송도교육장

■ 교육예약 : 대면, 온라인교육 모두 인터넷

3.6

태후 유차이법

일반운전자 준수사항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(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차로)는 일시정지 후 서행(제51조제1항)▶ 중앙선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반대방향 진행 차량 일시정지 후 서행(제51조제2항)▶ 어린이가 타고 있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(제51조제3항)	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(승용차 기준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색 및 표지 위반(제52조제4항)	범칙금 3만원

4

학원장 등 학원 종사자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 의무화

2020년 11월 27일 시행

- 2020.5.19. 국무회의에서 「**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**」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학원장 등 **학원 종사자**는 어린이(13세 미만)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**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** 받아야함
- 동 법안은 2016년 4월, 4살 어린이(해인 양)가 차량에 치인 후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어 제정되었음

5

은행기록장치 의무화 [2021년 1월 1일 시행]

구조변경신규차량은 2021년부터 개정법 적용

기존 어린이 통학버스는 2023년부터 적용

차량속도, 브레이크신호, 위치추적, 충격감지 등

6

좌석 등받이 높이 71CM 이상 [머리지지대 포함]

-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(약칭: 자동차규칙) [시행 2020. 7. 21]
- 12인승 마지막 열(4열) 좌석 중 가운데 좌석은 후방 시야확보를 위해 좌석등받이 낮아 튜닝(구조변경) 시 적용
- 접의식 의자도 동일하게 적용
- 비용 40만원 정도

7

어린이통학버스 중 전세버스는 3채널 (전방, 운전자, 최대한의승객) 블랙박스 의무화
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
2020년 4월 1일 시행
- 영상기록의 보관기간은 3일 이상일 것
-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, 설치 위치, 촬영 범위,
촬영 시간,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표시된
안내판을 사업용 자동차의 출입구 등 운수종사자나
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

8 노란색 도색면 중 광고 가능 면적 규정

-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광고 가능한 면
 - 사업용 자동차 : 옆면, 뒷면
 -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: 옆면
- 창문을 제외한 면적의 2분의 1이내

9

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

관할경찰서 신고 제한

2023년 4월3일 시행

-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
관한 특별법